

성 북 구 인 권 위 원 회

결 정

제 목 성북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에 대한 권고

의안번호 제2015-1호

제 출 자 성북구 인권위원회

주 문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개정안」 제9조 5항 “성북구는 위원회 구성 시 다양한 사회적 약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와 관련하여 성북구는 위원회 구성 시 다양한 사회적 약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일정 수의 위원들을 할당하여 특정 사회적 약자군에서 위촉되도록 재권고한다.

이 유

I. 권고의 배경

-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개정안」 제10조 제1항 “위원의 임기를 2년에서 1년으로 축소한다”와 관련하여 개정안에 동의하며,
- 2013.5.22. 성북구 인권위원회는 의안번호 2013-11호에 의거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에 의한 위원회 위원으로 사회적 약자들의 참여 보장을 위해 의무할당제 도입을 위한 권고안을 이미

결정하였으나, 수용되지 못하여 현재까지 노력조항으로 남아있는 바,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성이 재차 제기되었음.

- 이것은 최근 ‘청소년 무지개와 함께 지원센터’ 사업에서도 볼 수 있듯이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이 다수의 의견과 성북구의 미온적 정책 추진 의지에 의해 인권침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바,
- 사회적 약자의 의견이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의해,
- ‘사회적 약자의 참여 비율에 대한 의무할당제 도입’을 권고할 시 가능하다고 판단함.

II. 권고의 주요 내용

- 성북구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으로 사회적 약자들의 참여 보장을 위해 의무할당제 도입 마련

III. 결론

이상과 같은 내용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인권증진 기본조례」 제16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권고하기로 결정한다.

2015. 1. 14.

성 북 구 인 권 위 원 회